

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(고지)서

본 조치예정내용은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, 금융감독원장 결재,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과의 사전협의 없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외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1. 당사자	성명(명칭)	융창저축은행 前상임감사 임종◎			
	주 소				
2.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		“불입”			
3. 조치예정 내용		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통보 [주의상당(주의상당~주의적경고상당)]			
4. 관련 법 규		“불입”			
5. 의견제출방법	제출처	기관명	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	담당검사역	김한상
		주 소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(여의도동 27번지)	전화번호	02)3145-7376
		전자우편주소	hskim@fss.or.kr	모사전송	02)3145-7374
	기 한	2020년 4월 28일까지			

※ 유의사항

- 가. 본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또는 사전고지는 「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「금융기관검사 및제재에관한규정」 제35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
- 나. 위의 조치예정내용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, 금융감독원장 결재, 금융위원회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다. 조치예정내용

- 기관 및 임직원 제재

구 분	종 류	
기관제재	○ 영업 인가·허가 또는 등록 취소 ○ 영업·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○ 영업점의 폐쇄, 영업점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	○ 기관경고 ○ 기관주의
임원제재	○ 해임권고 ○ 업무집행 전부 또는 일부 정지 ○ 문책경고	○ 주의적 경고 ○ 주의
직원제재	○ 면직 ○ 징직 ○ 감봉	○ 견책 ○ 주의

- 과징금·과태료
 -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과징금(과태료) 부과
- 자율처리 필요사항
 - 직원의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
- 퇴직자 위법사실의 통지
 -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제14조 제4항 및 동 시행세칙 제51조 제4호, 제64조 제2항에 근거한 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령상 임원 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
- 조치생략
 - 이미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·부당행위가 추가 발견되는 경우 종전 제재시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조치생략
- 라.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불임 의견진술서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처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검사역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마.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바. 귀하께서는 금융감독원(제재심의위원회) 또는 금융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불임 의견진술서 서식에 제재심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출석 의견 진술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」 제59조의2에 따라 의견제출처에 신청하여 제재심의위원회 부의예정안 등을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사. 금융감독원은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진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검사국 직원의 배석 없이 진술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- 아.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예정내용 및 배포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의견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자. **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종료 후 담당검사역(5.의견제출방법에 기재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**
- 차.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< 붙임 >

□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보유

「상호저축은행법」 제18조의2에 따르면,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,

2008.8.21.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토지를 144억원에 매입한 후, 검사 종료일 현재(2019.10.1.)까지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음

※ 귀하는 위 지적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「상호저축은행법」 제18조의2